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12. 11. 28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1.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11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2.11.2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조 용 순 환경과장

가. 제안이유

2005년도 이후 최근 7년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이후 유가,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감소되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,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(안 제10조제1항 [별표 3])
 - 기본 부과금액(0.75m^3) “18,810원” 을 “20,350원” 으로
 - 초과 부과금액(0.1m^3 당) “1,430원” 을 “1,540원” 으로 한다.
- 2) 과태료의 부과징수(안 제19조)
 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명시하고 그 밖에 부과징수 관련 조항 정비
- 3) 그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
 -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법률용어 순화 등
 -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 적용 시기를 2013.03.01일부터 시행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5년도 이후 7년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그간의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명시하였으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0 안 제10조제1항 별표3 “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”에서 분뇨 청소수수료는 최근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동결하였고,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(0.75m^3 까지) 부과금액 18,810원은 현행 대비 8.2% 인상된 20,350원으로, 초과 부과금액(0.1m^3 당) 1,430원은 현행 대비 7.7% 인상된 1,54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음.

2005년도 대비 경유가격은 61.6%, 소비자물가는 22.0% 인상되었고, 2007년도부터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여 왔음. 청소수수료 비

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에 편중 소요되고 있고, 종사원의 임금 수준이 구 환경미화원 임금의 약 70.25%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론요지 : 없 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8. 기 타 : 없 음